

# 심 사 보 고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제출일 : 2002. 7. 16
- 제출자 :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02. 7. 24

### 다. 상정일자 : 2002. 7. 26

### 라. 의안번호 : 제 2002 - 26호

## 2.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가. 개정이유

- 병역법의 개정으로 병무사무를 2002. 7. 1부터 지방병무청으로 이관함에 따라 실과장의 분장사무를 개정코자 함

### 나. 주요골자

- 민방위 및 병무에 관한 사항 중 병무업무를 삭제함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 병무행정조직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병역법이 개정됨에 따라, 경상남도로부터 시군 병무사무 위임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 지침이 시달되어, 그동안 시군이 병무청으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던 병무사무를 2002년 7월 1일부터 지방 병무청으로 이관함에 따라, 자치행정 과장의 분장사무 가운데 민방위 및 병무에 관한 사항 중 병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 병역법의 규정에 의거 병무행정 사무의 일부를 위임받아 시행해 왔으나, 위임근거가 되는 병역법이 개정되어 관계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나 형식 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한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을 비롯해서 거창군사무전결처리규칙 및 거창군사무분장규정 등 관련 규칙이나 규정등을 함께 개정하여, 시행에 차질 없도록 조치해 나가야 될 것으로 사료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5. 토론요지

- 생략

#### 6. 수정안 요지

- 없음

#### 7. 심사결과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 병무행정조직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병역법이 개정되어, 병무청으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던 병무사무를 2002년 7월 1일부터 지방 병무청으로 이관함에 따라, 자치행정과장의 분장사무 가운데 민방위 및 병무에 관한 사항 중 병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그 내용이나 형식 등에 문제가 없어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함

#### 8. 소수의견 요지

- 생략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생략

[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 심 사 보 고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제출일 : 2002. 7. 16

○ 제출자 :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02. 7. 24

다. 상정일자 : 2002. 7. 26

다. 의안번호 : 제 2002 - 27호

## 2.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가. 개정이유

- 기초의원 정수 증가에 따른 상임위원회설치로 전문위원 등 인력 증원에 따라 군의 정원을 조정하여 증원하고, 결원의 총수 범위 내에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한 경과조치와 한시정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존속기한을 명시코자 함.

### 나. 주요골자

- 인력증원 및 정원조정(제2조 제2호)

· 의회 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른 인력 보장 및 정원조정 : 6명

- 집행기관의 정원 : 553명⇒555명(증 2)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0명⇒ 14명(증 4)

- 총 계 : 563명 ⇒ 569명 (증 6)

-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한 경과규정을 2003년 2월28일 까지로 규정 (부칙 제3조 제2항)

- 한시정원(주민자치,정보화·실업대책 추진,민원봉사상 수상자) 6명 중

- 5명은 2002년12월31일 까지로 하며, 그 중 2명은 2003년1월1일부터 상시 정원으로 환원하고

- 1명은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상시정원으로 환원 함(부칙 제5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 조례안은 기초의원 정수 증가에 따라 거창군의회에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어, 전문위원을 비롯한 인력이 증원되어 정원을 조정하고, '98년부터 4년간 국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한 구조조정이 2002년 7월 31일로 완료됨에 따라,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정원과 현원의 불일치 상태를 일치시키기 위한 조정기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제16550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정·현원관리지침이 시달되어 개정하는 것으로서,
- 집행기관의 정원을 553명에서 555명으로 변경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0명에서 14명으로 변경하여, 정원의 총수를 563명에서 569명으로 변경하고,
- 부칙 제3조에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초과 현원 3명은, 2003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라는 조항을 추가하고, 부칙 제5조에 규정된 한시정원에 관한 내용을, 한시정원 6명중 민원봉사상 수상자를 제외한 5명은 2002년 12월 31일 까지로 하고, 그 중 주민자치와 실업대책 추진을 위한 정원 2명은 2003년 1월1일부터 상시정원으로 환원하며, 민원봉사상 수상자 1명은 최초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상시정원으로 환원한다는 내용으로 그 내용과 형식 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 본 조례 개정과 아울러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시행규칙을 비롯해서 거창군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배정규정도 함께 개정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5. 토론요지

- 생략

## 6. 수정안 요지

- 없음

## 7. 심사결과

- 본 개정 조례안은 기초의원 정수 증가에 따라 거창군의회에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어, 전문위원을 비롯한 인력이 증원되어 집행기관의 정원은 553명에서 555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0명에서 14명으로 변경하여, 정원의 총수를 563명에서 569명으로 변경하고조정하고,
-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정원과 현원의 불일치 상태를 일치시키기 위한 조정기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 부칙 제3조에 초과 현원 3명은 2003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 부칙 제5조에 한시정원 6명중 민원봉사상 수상자를 제외한 5명은 2002년 12월 31일 까지로 하고, 그 중 주민자치와 실업대책 추진을 위한 정원 2명은 2003년 1월1일부터 상시정원으로 환원하며, 민원봉사상 수상자 1명은 최초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상시정원으로 환원한다는 내용으로 그 내용과 형식 등에 문제가 없어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함.

## 8. 소수의견 요지

- 생략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생략